

「인지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,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각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납부 후 전자수입인지(종이문서용) 원본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세액구간	세액		
		전체	계약자 부담	사업주체 부담
분양계약서 및 발코니계약서	1억원 초과 ~ 10억원 미만	15만원	7만 5천원	7만 5천원
	10억원 이상	35만원	17만 5천원	17만 5천원

※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신 후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(우체국, 은행)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(<http://www.e-revenuestamp.or.kr>)에서 발급 가능하며,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(126)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



## 온라인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

